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863
----------	------

발의연월일 : 2017. 8. 30.

발의자 : 전현희 · 김정우 · 주승용
한정애 · 신창현 · 윤관석
임종성 · 안규백 · 안호영
이원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운동시설, 도서실 및 휴게실 등의 주민공동시설이 입주자의 참여 저조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이를 활용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적 기업 등이 주민공동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와 사회적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입주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주민공동시설의 사용) ①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단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와 사용동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0조의4(주민공동시설의 사용)</u></p> <p><u>① 사업주체는 복지서비스시설</u> <u>중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u> <u>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u> <u>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민</u> <u>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입주자</u></p> <p><u>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u> <u>단체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u></p> <p>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 <u>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u></p> <p>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u>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u></p> <p>3.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 <u>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u> <u>단체</u></p> <p><u>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u> <u>의 범위와 사용동의 절차·방법</u> <u>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 <u>으로 정한다.</u></p>